

9.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꽃동네현도학원(이하“법인”이라한다) 정관 제35조 제6항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은 정교수 이상의 교원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부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.(2021.12.23.개정)

②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임무) ①위원회는 정년보장임용을 신청한 교원의 업적을 평가영역별로 확인하고, 평가한다.

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는 총장이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사 시에는 위원으로서의 평가·확인할 수 없다.

④제3항의 제척된 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 정수는 그 제척된 위원수를 감한 수로 한다.

⑤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년보장임용 심사대상) 최초 정년보장임용심사 대상은 재직 중인 교원으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대상자이며, 교수업적평가기준시행세칙에 의거한 직급승진 영역별 최소 승진 점수를 만족하여야 한다.

제6조(심사내용과 기준) ①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에서는 별표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확인·평가한다. 다만, 평가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평가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표를 밀봉하여 교원정년보장심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.

②평가영역에 의거 평가한 결과 평가영역별 평균 평점이 3.0 미만이 1개 이상인 경우 정년보장임용에서 제외한다.

③정년보장임용의 심사는 2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연1회를 초과하여 심사 받을 수 없다.

④교수로 신규 임용시에 정년보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따로 정한다.

제7조(정년보장 임용 제외 자)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및 임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

2.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제1항에 직권 면직 해당자

제8조(심사자료)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인사기록카드 사본

2. 교수업적평가표
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09년 6월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21년 12월23일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)

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가표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|
| 대상자 | 소속 : | 평가자 |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| |
| | 성명 : | | 위원(장) 인 | |
| 평가영역 | 평가항목 | 평가의견 | 평점 | |
| 1. 교수로서의 기본적자질 | (1)교수로서의 기본 인격과 품위 | | | |
| | (2)동료 교수와의 관계 형성 | | | |
| | (3)학생들로부터의 평판 | | | |
| 2. 설립 이념의 구현 | (1)가톨릭이념과 꽃동네정신에 대한 충실도 | | | |
| | (2)본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및 소속감 | | | |
| 3. 학교 발전의 기여도 | (1)학교 보직수행을 통한 기여도 | | | |
| | (2)학교 특성화에 대한 기여도 | | | |
| | (3)학교 인지도 제고에 대한 기여도 | | | |
| 4. 상벌 | (1)포상 | | | |
| | (2)징계 및 경고 | | | |
| 5. 평가자 종합의견 | | | | |

※ 심사평가기준 및 작성요령

1. 심사평정표상 평가영역 1-3항은 평정항목을 참작하여 각 평가영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평가자의 평가의견을 기재하고 평점 란에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.

최우수 : 5, 우수 : 4, 보통 : 3, 미흡 : 2, 매우미흡 : 1

2. 평가영역 4항은 평가하지 않고, 평가기간 중의 수상, 징계, 경고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.

포상 : 수상일자, 수상훈력, 공적내용

징계 및 경고 : 처분일, 처분사유

3. 평가영역 5항은 평정자의 종합의견을 기재한다.

※유의사항

1. 평균 평점이 3.0미만이 1개 이상인 경우 정년보장임용에서 탈락됨

2. 평가자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 및 평가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평가표를 밀봉하여 교원정년보장심사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함.